

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으로,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임
- 나.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/ 재위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 근거
 -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 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
 - 추진 필요성
 - 센터의 운영은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, 기능강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
- 따라서,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 범위 :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관리·운영 전반

○ 운영사업(센터의 기능)

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
-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-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 시설 개요

○ 시설명 :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(센터 2개소 포함)

○ 소재지

- 동북센터 :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, 5층(미아동, 남송빌딩)
- 동북센터1 :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77길 14-3, 5층(상계동, 문화빌딩)
- 동북센터2 :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2, 5층(휘경동, 우산빌딩)
- ※ 센터중 1개소는 계약기간중 운영종료 예정

○ 시설규모 : 동북센터(311.22㎡), 동북센터1(249.69㎡), 동북센터2(229.46㎡)

○ 담당지역 : 동북권 6개구(동대문, 중랑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)

마. 위탁기간 : 1년(2024.01.01 ~ 2024.12.31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: 금620백만원('23년 예산)

아. 심의결과 : 적정('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(2016.1.7.시행)]

제9조(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영양보호팀 심현희 (☎ 2133-7422)